



대통령직속  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

---

# 8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 결과보고

---



대통령직속  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

#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(8차) 결과보고

## 1 회의 개요

- 일 시 : '26. 3. 17. (화) 14:00~18:00
- 장 소 : 위원회 중회의실(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, S타워 16층)
- 참석대상 : 11명(위원 7, 위원회 4)
  - (위원) 조병옥 단장(함안군 숲안마을 이장), 송재일 교수(명지대학교), 심재성 주무관(완주군), 오세형 부장(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), 조원희 부위원장(전국농어민위원회), 채광석 연구위원(한국농촌경제연구원), 송원규 본의원
  - (위원회) 김호 위원장, 최봉순 사무국장, 이은영 팀장, 문병환 사무관
- 주요내용 : 농지 의제 발제 및 토론 등 정리

## 2 시간 계획

시간	소요	내용	비고
14:00~14:03	3'	• 개회 및 참석자 소개	농어업정책팀장
14:04~14:09	5'	• 인사말씀	김호 위원장 조병옥 단장
14:10~14:25	15'	• 제7차 농지제도 개선 TF회의 결과 보고	농어업정책팀장
14:26~17:55	210'	• 6차·7차 의제 발제 토론내용 정리 • 청와대 비서관 주재 농지전수조사 논의 내용 설명(조병옥) • 8차 의제 발제내용 설명 및 집중 토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(3-2) 농지관리체계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(조병옥, 조원희)</li><li>- (3-3) 농업진흥지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(심재성)</li><li>- (3-4) 농업진흥지역 총량 관리(심재성)</li></ul>	단장
17:56~18:00	5'	• 회의 정리 및 폐회	단장

## 3 주요 회의 내용

- 농지관리 전담기구 조직 신설 의제 발제: 조병옥·조원희 위원
- 농업진흥지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총량관리: 심재성 위원
- TF 9차<sup>(3.25.,수)</sup>회의 의제 발제(1-2, 3-1, 3-7) 및 10차<sup>(4.7.,화)</sup>일정 등

## 4 주요 논의 내용

### 3-2 농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

- 현재 농지업무는 한국농어촌공사(임대농지 농지은행),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(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), 지자체(농지대장 관리 및 전용) 등 다원화로 농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일원화 제기
  -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및 농지연금 업무를 신설조직으로 이관
  - 농지전용 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사무를 신설 기구로 회수하여 관리 책임성 강화
- 중앙정부부터 시군 읍면동까지 이어지는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청(가칭) 조직 신설이 필요
  - 농지 취득, 이용, 전용, 사후관리 등 관리가 어렵고 감사도 많이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농지 전담 기구가 필요
  - 현재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심지어 읍면동의 인구감소로 인해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운영도 어려움
    - 예) 경북 의성 평균연령 62세
- 행정기구 신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정부조직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모든 농지 업무를 이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재구성하는 것도 있음
  - 기구 신설 및 일원화로 책임을 강화하면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
  -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,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 분산된 농지관리 데이터를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해 직불금 부당수령 금지 등 사후관리 강화

### 3-3 농업진흥지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

-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을 통한 간척지나 집단화 된 토지 및 주민이 지정 신청하는 경우 지정
  - 집단화 규모(평야지 10ha이상, 중간지 7ha, 산간지 및 주민희망 3ha)
-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인센티브 확대 및 일원화 필요
  - 현재 농업진흥지역 면적 구간 기준에 따라 직불금 차등 지원
    - ⇒ 구간 차등 폐지 및 지급단가 상향 지원
  - 경지정리, 용배수로, 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정비
  -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농지관리 기금 30% 이상을 신규 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기반정비에 직접 환원 법제화
  - 우량 종자(육묘 포함), 비료, 농약 등 영농자재 보급 단가 지원
  - 신규 진흥지역 지정시 농생명산업생산지구 지정 및 스마트팜·첨단농업 시설 설치 규제 완화

### 3-4 농업진흥지역 총량관리

- 식량 안보에 필요한 필수 농지면적을 설정하고, 전용되는 면적만큼 대체 지정하는 등 엄격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나 대체지정 농지가 없음
  - 농업진흥지역의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데이터가 없음
    - 예) 5년 동안 농업진흥지역 10ha이하 농지전용 면적을 배정하고, 배정량의 기준을 통해 진흥지역 보존은 인센티브, 초과는 패널티 적용
      - ⇒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경감 지원이나 세제감면으로 유인
  - 신규로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농지는 농지조성사업을 실시한 간척지나 그린벨트 지역의 녹지지역이 해당되며 그린벨트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
  - 식량 안보란 단어 너무 광범위함, 식량의 품목을 명확히 제시 필요

- 농업진흥지역의 총량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분야 사업의 농지보전 부담금의 감면 개편 필요
  - 도로, 철도, 제방, 사방, 100% 감면, 하수·폐수종말처리장, 분뇨처리시설, 축산폐수시설, 50% 감면 폐지 ⇒ 농지보전부담금의 50%, 또는 100% 부과
- 농업진흥지역 총량관리는 감소되는 면적 속도와 지정하는 속도의 폭이 완만해야 가능함
  -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신규 지정 지역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

## 5 향후 계획

- TF 9차 및 10차 회의 일정 확정
  - 제9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: 3.25.(화) 14:00
  - 제10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: 4.7.(화) 14:00
- 각 위원별 담당 의제에 따른 발제 및 토론 등
  - (1-2) 상속이농 농지체계적 관리(농식품부)
  - (3-1) 지역 특성 고려, 농지정책 차등 적용(채광석)
  - (3-7)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따른 농지이용 제도적 기반 마련(강정현)
- 향후 회의 진행
  - 각 의제 발제 및 토론을 발제 담당자가 정리한 내용을 재정리
  - 재정리 내용으로 전문가 간담회
  - 전문가 간담회 내용으로 토론회